
(주) 인게이지 UNGP지지 선언

(주)인게이지는 Glopbal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인권경영 및 인권존중을 위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원칙(Gu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nman Rights)을 준수하고 이를 지지한다.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기업은 최고결정권자의 결정으로 인권경영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언해야 한다.
-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기업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기업은 인권경영 관련 정보의 공시시스템을 정립하고, 정기적으로 인권경영의 실천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 기업은 기업활동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2. 고용상의 비차별

-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성소수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기업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 기업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한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기업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4. 강제노동의 금지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익도 얻지 말아야 한다.

5. 아동노동의 금지

기업은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기업은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해야 한다.

6. 산업안전 보장

-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기업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기업은 자회사나 공급업자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업은 협력회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 기업은 보안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에는 외주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기업은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9. 환경권 보장

- 기업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기업은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0. 소비자 인권 보호

-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고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기업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하며, 기업이 수집,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지선언일] : 2024-09-02부.